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94

제출연월일 :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 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간 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2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5조(「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1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지 아니한 사람	<u>라</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격사유)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	
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u>니한 자</u>	<u>라</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	
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격 사유)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	
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 피한정후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